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64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윤재옥・김기웅・김상훈

이인선 · 강대식 · 최은석

주호영 · 추경호 · 우재준

김승수 · 권영진 · 유영하

의원(12인)

제안이유

전국 최초로 민·군 공항을 통합하여 이전·건설하는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 로 전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을 1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두며, 국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하 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재원을 차입·운용하기위해 대구광역시 조례(「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설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의무기금으로두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예정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1급 상당의 조직 설치(안 제13조의2 신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별정직 1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하도록 함.

- 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의 법정의무기금 설치 근거[안 제3장의2(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신설]
 -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운용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을 설치하고, 대구광역시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함.
 - 2) 건설기금의 재원은 국가의 보조금·융자금, 국가의 지원금,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하고, 용도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정함.
 - 3) 건설기금의 재원을 조성 · 운영하기 위해 건설기금의 부담으로 국

가의 회계 또는 기금 및 금융기관,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대구광역시장이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하도록 함.

법률 제 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신공항건설본부)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공항건설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를 둔다.
 - ② 본부의 본부장은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의2(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기금

- 제19조의2(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기금의 설치)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운용하기 위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 요한 사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9조의3(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19조의4에 따른 차입금
 -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 융자금
 -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 4. 제22조에 따라 유치하는 민간자본
 - 5.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
 -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7. 그 밖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1.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 2. 군 공항 내 미군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양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경비

- 3. 제2조제2호 각 목의 사업 중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행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4.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생계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
- 5. 제19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6. 제23조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
- 7.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 8. 그 밖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 제19조의4(차입금) ① 기금의 재원을 조성·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 금융기관,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일시 차입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제8조"를 "제8조 및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	등) ①
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	
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u><단서 신</u>	
<u>설></u>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등의 직
	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3조의2(신공항건설본부) ①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공항건설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의 본부장은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
	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신 설>

사항 외에 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전부지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의2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 기금

- 제19조의2(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 기금의 설치) ①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안 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 을 운용하기 위하여 대구경북통 합신공항건설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종전부지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9조의3(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19조의4에 따른 차입금
 -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 조금·융자금
 -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 원금
 - 4. 제22조에 따라 유치하는 민간

자본

- 5.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
-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금
- 7. 그 밖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1.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주변지 역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 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 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 2. 군 공항 내 미군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양 국가 간의 합의에 따 라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경비
- 3. 제2조제2호 각 목의 사업 중에 서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 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4.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생계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
- 5. 제19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국가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는 통합신공<u>항 건설사업</u>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 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리금 상환

- 6. 제23조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 7.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 8. 그 밖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 제19조의4(차입금) ① 기금의 재원 을 조성·운용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국가 의 회계 또는 기금, 금융기관,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일시 차입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 제8조 및 제 14조-----
 - -----. 다만, 종전부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군 공항 이전사 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자 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 또는 융
	<u> 자한다.</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